

2017년 4월 경상남도 반사회 홍보목록

순번	홍보자료	도 담당부서
1	재난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19종 시설 보험가입 의무화	안전정책과
2	자동차세! 선납으로 10% 할인 받으세요	세정과
3	세금·법률고민, 마을세무사·변호사와 무료 상담하세요	세정과
4	공유토지 분할 신청 종료 안내	토지정보과
5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예방대응과
6	U-119 안심콜 서비스 가입하세요!	구조구급과
7	3월~4월은 부정군수품 집중 계몽·홍보·단속의 달입니다. 부정군수품은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해군군수사령부 헌병과견대

재난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19종 시설 보험가입 의무화

(자료제공 : 재난건설안전본부 안전정책과 ☎ 055-211-2733)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적용시기 : 2017년 1월 8일부터)

가입대상 및 가입의무자

- 보험 가입대상 : 19종 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9.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금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상가
1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전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 가입의무자

-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소유자
 -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자
 -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가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자
- ※ 미 가입 시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차이점

- ▶ **화재보험** :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건물, 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 ▶ **재난배상책임보험**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 ⇒ **보장범위가 다르다**

<구체적 사례>

10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한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층 및 다른 층에 인명피해가 발생 했을 경우 보상되는 부분

구 분	화재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1층 자기시설	보 상	보 상
제3자 인명피해	미보상	보 상
제3자 재산피해	미보상	보 상

자동차세! 선납으로 10% 할인 받으세요

(자료제공 : 행정국 세정과 ☎ 055-211-3724)

○ 자동차세 선납이란?

자동차세는 6/1일, 12/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연 세액을 1/2씩 총2회에 걸쳐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후불제인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최고 10%까지 할인해 주는 제도

○ 세부내용

신고납부 기간	선납대상기간	납부세액	공제액
1.16 ~ 1.31	1월 ~ 12월	연세액	연세액의 10%
3.16 ~ 3.31	4월 ~ 12월	연세액의 3/4	연세액의 7.5%
6.16 ~ 6.30	7월 ~ 12월	연세액의 1/2	연세액의 5 %
9.16 ~ 9.30	10월 ~ 12월	연세액의 1/4	연세액의 2.5%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납기와 징수방법)

○ 신고·납부방법

- 신고 : 자동차 등록 시·군 세무부서 또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www.wetax.go.kr)
-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등

세금·법률고민, 마을세무사·변호사와 무료 상담하세요

(자료제공 : 행정국 세정과 ☎ 055-211-3718)

○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란?

- (마을세무사) 비용문제 등으로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세무사
- (마을변호사) 개업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 등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무료 법률 상담을 위하여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

○ 이용자

- 세금·법률 관련 고민이 있는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
 - ※ 영세사업자 등 취약계층 우선 상담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 재산보유자 등의 경우 세무 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며, 법률상담 외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하지 않음

○ 주요 서비스

- (마을세무사) 생활 속 국세, 지방세 세무 상담 및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지원
- (마을변호사) 법률문제 발생 시 신속한 상담 및 상담 후 소송 등 구조가 필요한 경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또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지원

○ 이용방법

- (마을세무사) 정부3.0서비스앱, 인터넷 검색창, 지자체 홈페이지, 주민센터에서 명단확인 후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 필요 시 대면상담
- (마을변호사) 주민센터, 대한변호사협회 기획과, 법무부 법무과, 인터넷 검색창에서 명단 확인 후 전화, 팩스, 이메일 상담



생활 속 세금고민, 마을세무사와 무료로 상담하세요

마을세무사란?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입니다.

마을세무사를 통한 세금고민 해결법 4단계



※본전환 주의를 주신 상담하기 위해 방문문의 가능 지역 보유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033

나를 위한 1500명의 무료변호사

마을변호사와 상담하세요



1500명 무료변호사
1500명 무료변호사
1500명 무료변호사

1500명
연간 권역 1,412개
주민 집 1천여
1,500명씩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1500명
연계되지 않더라도
이메일을 통하여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00명
기타 무료. 민사무소에서
마을변호사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법률구조협회
법무부 업무과에서도
마을변호사를 찾아드립니다

1500명
내이메일 '마을변호사'를
검색해보면 홈페이지에서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대한변호사협회, 기획과 | 02-2067-7193 | 법무부 법무실 법무대 | 02-3110-3000

공유토지 분할 신청 종료 안내

(자료제공 : 도시교통국 토지정보과 ☎ 055-211-4435)

재산권행사 불편해소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17. 5. 22. 종료되므로 수혜 대상 토지소유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유토지 분할이란?

공동 소유한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하게 분할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

○ 추진기간 : '12. 5. 23 ~ '17. 5. 22

○ 신청대상

-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부지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 토지는 제외)

○ 신청방법

- 분할신청 : 공유토지 소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서 첨부하여 시군구청 지적업무 부서에 신청
- 신청서류
 - ① 공유토지 분할신청서
 - ②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 ③ 건물분 재산세의 과세대장 또는 납부증명서 등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자료제공 : 소방본부 예방대응과 ☎ 055-211-5366)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 주택용 소방시설 :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 설치대상 : 모든 주택
 -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아파트와 기숙사 제외)
- 설치기준
 - 분말소화기 : 세대별, 층별 1대 이상(기본-3.3kg, ABC급)
 - 단독경보형 감지기 : 구획된 실 마다 1개(거실 1, 부엌 1, 각 방마다 1개씩)
 - * 단독경보형 감지기(건전지 작동) - 연기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음을 울려주는 장치
- 구입방법 :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

관련 법령

-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제6조
-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모든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완료해야합니다.



소화기 3.3Kg (약 2만원)



단독경보형 감지기 (약 1만원)

U-119 안심콜 서비스 가입하세요!

(자료제공 :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 055-211-5423)

U-119 안심콜 서비스는 사고·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시 119로 신고할 경우 미리 등록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개인 맞춤형 119구급서비스 제공

○ 가입대상 : 가입 희망자(장애인, 홀로어르신, 고령자 등 전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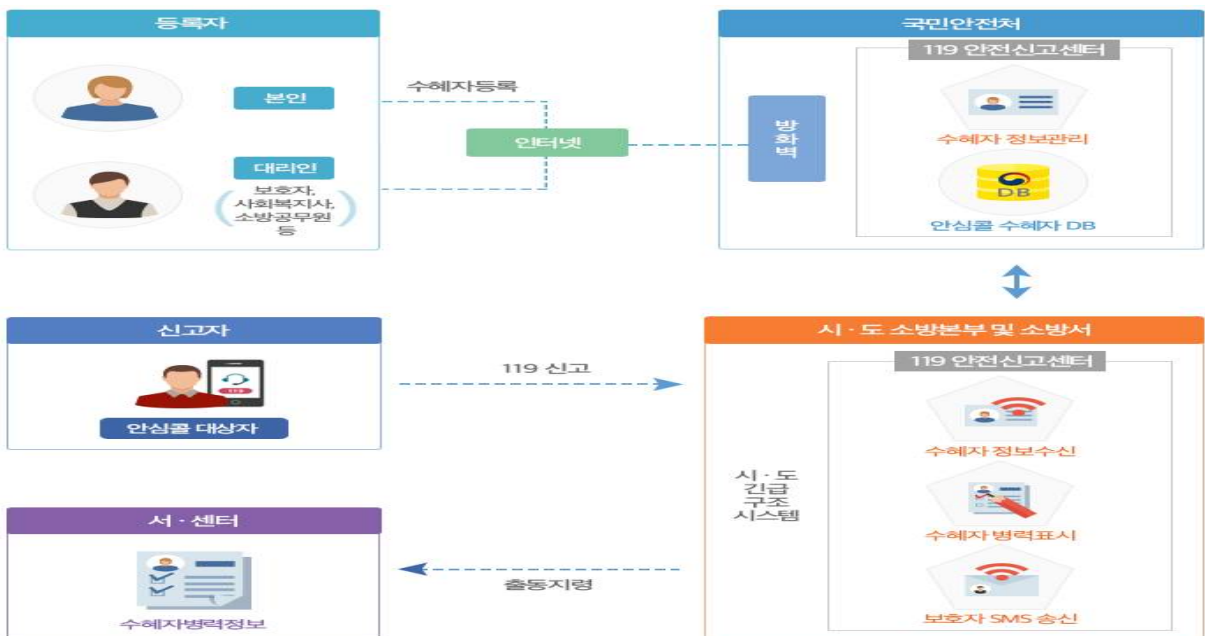
○ 가입방법

- 가입방법 : 119안전신고센터(<http://119.go.kr>) U-119 안심콜 서비스 접속
- 등록자 : 본인 및 대리* 등록 가능
 - * 보호자 또는 119구급대원, 의용(여성)소방대원, 사회복지사, 방문 간호사에게 요청하거나 가까운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로 방문하여 서비스 가입 가능
- 등록정보 : 전화번호, 병력, 복용약, 치료병원, 보호자 등 등록
- 가입혜택 : 119신고 시 사전 입력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개인 맞춤형 구급서비스 및 보호자에게 문자 알림서비스 제공

○ 유의사항

- 사전 등록된 본인과 보호자의 전화번호로 신고해야만 구급서비스 제공 가능

○ U-119 안심콜 서비스 체계



3월~4월은 부정군수품 집중 계몽·홍보·단속의 달입니다.

부정군수품은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자료제공 : 해군군수사령부 헌병과전대 ☎ 055-211-5366)

군용물품, (유사) 군복류, 군용장구를 불법반출·제조·판매·착용(휴대)하는 것은
범법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부정군수품이란 무엇인가요?

- 부정유출 및 불법 유통되는 한 · 미군 군수품 일체, 불법 제조 · 판매되는 군복류 및 군용장구, 사제 군복류

○ 단속대상(형사처벌) 품목은 무엇인가요?

- 총기, 탄약, 폭발물, 군용차량 / 장비, 군용식량, 유류 및 부속품, 기타 군용물품
- (유사)군복류 : 전투복, 전투화, 계급장, 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 등
- 군용 장구류 : 권총집, 구급대, 탄입대, 요대, 방탄헬멧, 반합, 수통, 모포 등

○ 단속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총기, 탄약, 폭발물 관련 범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군용차량, 장구류, 식량, 피복 등 군용물 범죄 :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
- (유사)군복 / 군용장구 불법제조 · 판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유사)군복 및 군용장구 불법착용 · 사용 :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 자진 신고 / 반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 부정군수품 소지 · 보관자가 자진 신고 / 반납한 경우, 가능한 선처 조치

○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 가까운 헌병대, 경찰관서
- 국방부 부정군수품 단속위원회 : 02-748-1882, 1885~7
- 국방헬프콜 : 국번 없이 1303번
- 국방부조사본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ndcic.mil.kr>) 「신고 및 제보」 클릭!
※ 신고자는 심의 후 신고 보상금 지급 / 신고자 신원 비밀 보장